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불법촬영물 실시간 동영상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64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불법촬영물 실시간 동영상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덕흠의원 등 18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2. 11.

다. 회부연월일 : 2025. 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함)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모니터링”이라 함)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이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불법촬영물등 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7항 및 제22조의6제1항 각 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불법촬영물 실시간 동영상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등인 조치의 무사업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불법촬영물의 유통 여부를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플랫폼 등을 운영하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 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7항 및 제22조의6제1항 각 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 ⑥ (생략) <u><신설></u>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조치의무사업자 중 실시간동영상(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듣거나 볼 수 있는 영상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하기</u>

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제22조의5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의 대상은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
- 동 개정안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의 실시간 동영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가 부과되는 조치의무사업자¹⁾는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서비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① 부가통신사업자와 「저작권법」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해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②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음.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①법 제22조의5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법 제2조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세부 요건>

구분	세부 요건
부가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매출액 기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이용자 수 기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 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음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 「저작권법」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해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예: 파일 공유 서비스 제공자

자료: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실시간 스트리밍 업체(부가통신사업자)는 주로 대형 플랫폼이라 볼 수 있음. 국내에서는 네이버의 ‘치지직(CHZZK)’과 ‘SOOP(구 아프리카 티비)’이 있으며, 해외 플랫폼으로는 유튜브, 틱톡, 트위치, 페이스북 라이브 등이 있음.

-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7항을 신설하여, 실시간 동영상²⁾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가 위의 삭제·접속차단 등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2) 실시간 동영상은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듣거나 볼 수 있는 영상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조제20호나목의 실시간동영상 정의를 가져온 것으로 보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것임. 실시간 동영상에 이용한 성착취물, 음란물의 배포·공유로 인하여 사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빠르게 확산되는 인터넷 정보의 특성상 즉각적인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법촬영물 방지를 위하여 실시간 동영상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하다고 보임.

-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n번방 사건’은 가해자들이 미성년자가 포함된 피해자들을 협박해 실시간 성착취 영상을 유통시킨 바 있으며 우리나라,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여성 스트리머를 강압하거나 협박하여 성적인 실시간 동영상을 유통한 범죄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주요 실시간 동영상 제공사업자들은 성착취물이나 음란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은 AI 등을 활용한 필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예를 들면, 유튜브(Youtube)의 경우에는 Content ID³⁾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콘텐츠를 등록하여야 하

3) ‘Content ID 시스템’은 자신이 소유한 콘텐츠(음악, 동영상) 등을 사전에 YouTube의 콘텐츠 데

며, 실시간으로 AI 필터링 기능을 활용하여 라이브 스트리밍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팀을 통해 상시 감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용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틱톡(TikTok)은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고 있는 영상 콘텐츠 등에서 부적절한 언어나 이미지가 탐지되는지 분석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콘텐츠 모더레이터(Content Moderator)를 이용하여 사용자 신고에 대응하고 AI가 위험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방송에 대해 직접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네이버가 운영하는 실시간 방송 플랫폼인 치치직(CHZZK)에서는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콘텐츠를 감지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 필터링 시스템인 엑스아이(X-eye)를 활용하여 음란물 등 불법촬영물이 스트리밍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으며, 치치직 내부 조직과 그린웹서비스를 통해 인력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이처럼 실시간 불법촬영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은 타당하며, 실제로 국내외 주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기술적 한계로 인해 현재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만으

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사전에 운영자 측에서 사전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계함.

로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완전한 실시간 대응을 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인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6조4)에 따르면, 동영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은 제목 필터링이나 문자열 비교방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식한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를 상시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다만, 해당 고시를 해설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해설서⁵⁾」에 따르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러한 관리 조치의 기술적 구현이 현저히 어려운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4)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6조(불법촬영물 등의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목필터링이나 문자열비교방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식한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를 상시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이용자의 검색 결과 송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
2.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

5)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해설서」, p. 23.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예시(사전 비교·식별의 예외)]

①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② 동영상 업로드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

ex) 업로드 기능이 없는 경우, 동영상 업로드가 불가능한 경우, 스틸이미지만 게재 가능한 경우, 주소링크나 영상태그를 통한 게재 등

동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실제로 구축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기술적인 측면 이외에도,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적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분의 검토가 필요함.

○ 첫째, 동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촬영물 등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체계의 기술적·운영적 요건을 명확히 적시하여 규제 법률의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동 개정안은 구체적인 기술적 또는 운영적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여부를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앞에서 대규모 플랫폼인 구글(유튜브), 틱톡, 네이버(치지직)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법촬영물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는 기술적으로는 AI 필터링 시스템 등과 같은 고도의 정보기술시스템이 요구되며, 운영적으로는 팀 단위의 실시간 모니터링 인력이 필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불법촬영물 감시가 가능하기 위한 여러 요건을 법률상 또는

시행령 위임을 통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술적·운영적 요건의 세부 사항을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요구되는 불법촬영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률 유보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둘째, 동 개정안에 따르면,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가 주기적 또는 수시로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지를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주기로 점검하지 않으면 의무 위반이 되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감시 주기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동 개정안에 대한 소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6)에 따라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

6)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 ②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등 ③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불법촬영물 관련 조항을 감안할 때, 인터넷BJ (Broadcasting Jockey) 또는 크리에이터로 불리는 인터넷방송인 본인이 자발적으로 출연하여 음란성, 선정성,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는 경우, 해당 방송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촬영물로 볼 수 있는지 검토의 필요하다는 입장임.

- 아울러, 실시간 동영상으로 진행되는 인터넷 방송에서 음란성, 선정성, 폭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증거자료 채증 후 사업자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⁷⁾에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따라 방심위 심의 후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현행 법령 체계가 이미 존재함에 따라 개정안 신설에 따른 실익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동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는 실시간동영상 영역에서 기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법대로 불법촬영물 등 유포 방지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신고에 따라 사업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인터넷 산업 특성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동 개정안은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 종합적으로 보면, 성착취물, 음란물의 관련 인터넷 정보의 특성상 즉각적인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법촬영물 방지를 위한 실시간 동영상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은 있지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의 명확성 확보 필요성과 다른 법에서 유사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5